



제5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 86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87

제5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4조)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 개정 지침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의 7개 항은 기존 지침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의 7개 항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1항에서 제보자를 “제보자”로 표기하여 제보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을 순서를 바꿔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제7항의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에서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과 같이 ‘불구하고’를 삭제하였다.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아니한다.
-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 개정 지침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는 기존 지침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제1항의 피조사자를 “피조사자”로 표기하여 피조사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1. 검증주체 | 90
2. 검증 시 적용지침 | 92
3. 검증원칙 | 94
4. 검증기간 | 96
5. 검증기구 | 97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1. 검증주체 (제16조, 제27조)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연구기관 자체 검증의 원칙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연구기관 자체 검증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 과제가 수행될 당시에 이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관리·감독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검증 책임이 있다. 만약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외부기관이 대신할 경우,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자체 역량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연구의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학계의 연구부정행위 자정 기능은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연구부정행위에 책임있게 대응할 때 실현된다. 이 내용은 "6-5 검증기구"(제21조 조사위원회 구성)에 연결된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검증원칙의 예외

연구기관이 자체 검증을 할 수 없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 연구수행 및 연구원 보유가 소규모여서 자체 조사 역량이 충분치 않은 연구기관의 경우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외부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연구기관 자체의 인력 구조상,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관련된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내용은 “6-5 검증기구”(제22조 조사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연결된다.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산학협력 등 연구기관 간 협력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연구 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 검증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2. 검증 시 적용지침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본 개정 지침에서는 시행일과 소급 적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지침의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그 이후의 연구부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시의 지침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 학계의 건전한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연구는 이전 지침의 규정과 당시 학계에서 통용되었던 관례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연구수행에서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었던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여 제재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므로 소급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연구부정행위 적용 기준일의 경우, 특정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신/구 지침 가운데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는 해당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학문 연구의 특성상 연구부정행위가 정확하게 언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은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고, 주로 월 단위의 개략적인 기간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기를 지침 적용의 기준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한 날,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포함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침 적용의 기준일이 된다. 만일 해당 연구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 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적용 기준일이 된다.

▶ 사례 1

이 지침의 발령일이 2015년 11월 3일이므로, 해당 연구부정행위의 실제 발생일자에 관계없이, 논문 발표일이 2015년 11월 3일 이전이면 이전 지침을, 2015년 11월 3일 이후이면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사례 2

논문 발표일이 2015년 11월 3일 이전이면 이전 지침을 적용하되, 이 논문에 포함된 연구부정행위를 재인용한 연구결과물이 2015년 11월 3일 이후에 발표된 것이면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검증원칙 (제17조)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의 소재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후속 조치의 권한을 가진 연구기관 산하의 조사위원회에 두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다만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서도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 의심으로부터 결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로 전환된다.



예 민사소송법에서 입증책임 전환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의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0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의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서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므로 상대방에 비해 증거능력의 우위를 상실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증거우위의 원칙).

※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의 원칙²⁹⁾

상이한 증거들이 있을 경우, 더 신빙성있는 증거가 우위에 있다는 원칙. 이를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적용하면, 제보자가 제출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하여, 피조사자가 더 신빙성있는 반증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면서, 관련 자료의 파기, 훼손, 은폐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보자의 제보를 방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보자의 제보가 증거능력에서 피조사자의 주장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피조사자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고서는 실수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고의적 훼손과 정직한 실수로 인한 소실의 구분은 어려운 문제이며 결국 연구 기록 및 결과물 등을 토대로 전체적인 정황 파악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9) 한국연구재단(2014),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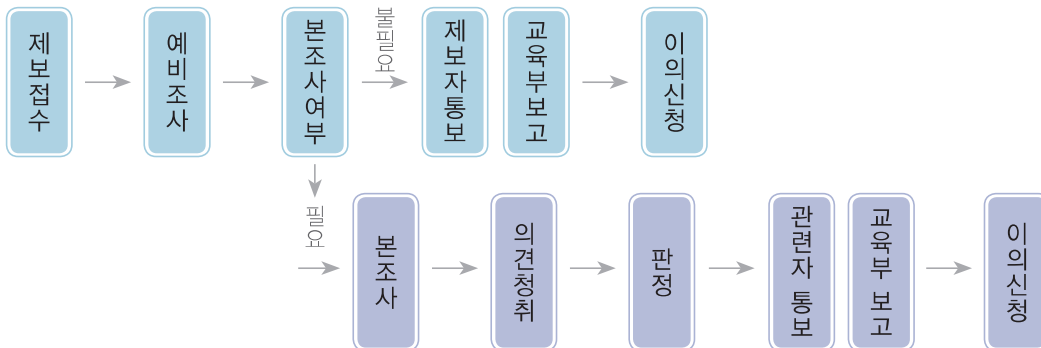


4. 검증기간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기간을 단계별로 요약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개시	종료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전체 기간 제24조	제24조, 예비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			
예비조사 제19조	제19조,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 착수	제19조, 종료 후 10일 이내 제보자에게 통보 제29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제25조, 제보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
본조사 제20조	예비조사 종료 후, 즉시 착수	제24조, 판정 종료 후 즉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 통보 제29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제25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25조,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
재조사 제28조	제28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청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전체 검증기간은 예비조사 개시 후 최대 6개월이며, 연구기관은 이 기간 안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제19조), 예비조사로부터 판정까지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제24조).



※ 예비조사 후 “본조사 불필요” 판정에 대해 제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예비조사 단계로 돌아가서 재개하며, 본조사 판정 후 “결과 통보”에 대해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본조사 단계로 돌아가서 재개한다.



5.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연구기관에서는 조사위원회 구성 시 본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본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연구분야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공자 또는 과거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충분하거나 현재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본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중 최소 1인은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로 선정되어야 한다.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전체 인원	5	7	9	11	13	15
전문가 인원	3	4	5	6	7	8
외부인 인원	2	3	3	4	4	5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본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는 조사위원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사제 관계인 경우,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조사위원이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사제 관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던 관계 등)로 특정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조사위원은 피조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피조사자와 협력 또는 경쟁 관계 양자를 모두 포함)에 학자적 양심에 따라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본 개정 지침에 나타나 있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과정에서 면담 및 질의 등을 위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 조사 관련자에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관련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출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거 자료 제출 불응과 동일하게 불리해질 수 있다.

② 자료 제출 요구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진술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피조사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입증 책임의 전환 및 증거 우위 원칙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내용은 “6-3 검증원칙”(제17조)에 연결된다.)

③ 증거 보전 조치

-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서도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 의심으로부터 결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로 전환된다. (이 내용은 “6-3 검증원칙”(제17조)에 연결된다.) 피조사자가 자료를 훼손, 은폐, 파기하거나, 증거물이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피조사자의 연구기관 출입 제한 및 증거 자료의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연구기관 출입 제한 및 증거 관련 자료의 이용 제한은 피조사자의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사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증거 보존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재 조치 건의

-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수행을 통해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최종 판정될 경우, 습득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피조사자에 대해 적합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당사자가 속한 해당 연구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자체 규정을 근거로 파면, 해임, 징직, 감봉, 연구비 회수,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적합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 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개정 지침에서는 외부 검증기구에 연구부정행위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자체 조사위원회를 배제한다.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 조사위원회가 검증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지침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 자체 조사위원회를 검증기구로부터 배제하고, 이외의 외부 전문기관에 검증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둘째,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있어서 해당 연구기관 자체 조사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기에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은 검증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셋째,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있어서 “제28조(재조사)”에 따라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재조사를 연구기관 조사위원회 이외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넷째,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이외의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1. 검증절차 | 104
- 2. 예비조사 | 106
- 3. 본조사 | 110
- 4. 판정 | 112

제7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검증절차 (제18조)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개정 지침의 기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를 기본으로 하며, 이의신청과 재조사를 추가할 수 있다(세분화하면 예비조사, 이의신청, 본조사, 판정, 이의신청, 재조사 등 6단계가 될 수 있음).

예비조사: 제보자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본조사 착수 여부 결정

본조사: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검증

판정: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과 조사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속화 조치(fast track)”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위원회가 예비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② 피조사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본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 적발 또는 제보 시, 1차적인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에 연구자(피조사자)가 속한 전문기관 및 대학등 해당 연구기관에 설치된 자체 조사위원회에 있다.

연구 수행 당시와 현재 시점 사이에 피조사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다를 경우, 검증 주체는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이며, 피조사자의 현재 소속 기관은 이전 소속 기관의 협조 요청(피조사자의 조사위원회 출석, 검증절차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본 개정 지침 제18조 제4항은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집을 발간한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연구부정행위가 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알려짐으로써 연구부정행위 결과가 계속하여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고, 연구부정행위자와 다른 연구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한 연구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예비조사 (제19조)



제19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관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예비조사의 의의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 제보에 대해 본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본조사가 가급적 단시간 내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요건(조사의 적합성, 시효의 적절성,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본조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제보들이 곧바로 본조사에 회부될 때 발생하는 조사위원회의 과부하를 사전에 차단하여 검증의 운용상 효율성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예비조사 검토사항

조사의 적합성(제보 내용이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본 개정 지침은 연구진실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험자의 인권 및 생명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연구비 유용 및 장비 관리 불량 등 본 지침의 범위 이외의 연구부정 또는 연구부적절 행위 사안은 해당 주제의 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단,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 행위가 연구비 부정 수급 및 중복 수혜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본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시효의 적절성(연구부정행위 발생 시기에 따른 지침 적용 가능성 검토)

이 개정 지침은 발표 시점부터 적용된다(“부칙 제1조”). 단, 이 지침의 발표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지침을 적용한다(“부칙 제2조”). 연구부정행위 발생의 정확한 시점은 연구자 본인 이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연구결과물의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연구부정행위 자체의 발생 시점이 이 지침의 발표일 이전이라도, 그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이용한 연구결과물이 이 지침의 발표일 이후에 발표되었다면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내용은 “6-2 검증 시 적용지침”에 연결된다.)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본조사가 원활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제보자의 제보는 연구부정행위 피조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에서 어떤 유형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여 명예 훼손을 피해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연구 결과물을 직접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제보들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함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예비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정확한 검증은 본조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보자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증거자료도 미리 제출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최소 요건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7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연구부정행위 주체 및 관련자의 소속과 실명
-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결과물
- 부정행위의 유형, 내용 및 발생 시기

예시 1

A대학 생명과학부 ○○○ 교수는 → **관련자 실명, 소속**
 2015년 6월 중순 B대학 교수로 있을 당시에 자신의 실험실에서 → **발생 시기**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실험을 수행하던 중 → **해당 연구과제**
 일부 데이터를 임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였음 → **부정행위 유형**

예시 2

서울태양광에너지연구소 △△△ 연구원이 → **관련자 실명, 소속**
 2015년 3월 1일 → **발생 시기**
 [대한태양광학회지]에 발표한 “태양광 수집 장비 개발공정”에 관한 논문은 → **해당 연구결과물**
 일본 호카이도 대학 야마구치 교수의 논문 “태양광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표절한 것임
 → **부정행위 유형**

그러나 익명 제보의 경우 위의 제보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향후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제보자의 추가 진술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익명성을 이용한 악의적인 투서 성격의 제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제보의 내용은 바로 본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

이 개정 지침에서는 예비조사의 경우 본조사와 달리 조사기구의 구성이나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예비조사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연구 진실성 관련 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등 기관 실정에 따라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예비조사의 기간

연구기관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예비조사 착수 기간과 수행 기간을 자체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개정 지침 제24조는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판정까지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조사 기간을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비조사 결과 통보

예비조사 종료 후 해당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조사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연구기관이 제보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기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비조사 결과 이의신청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5조 1항). 대부분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제보된 연구 과제를 수행한 해당 연구기관이 직접 예비조사를 수행하지만,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 “제32조(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 외부 기관이 예비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장”이 아니라 “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하였다. 만약 제보자가 실제 조사를 수행한 기관을 알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 문의를 하고, 해당 연구기관은 이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한다.



3. 본조사 (제20조)



제20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본조사의 의의

본조사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서,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 및 관련자들의 연구실 출입 통제, 조사위원회 출석 소환 등 피조사자 및 관련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본조사 세부 단계

조사단계: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과의 면담 및 자료 검토 등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

변론단계: 조사내용 및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 청취 단계

결정단계: 이의제기 및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단계



* 교육과학기술부(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 80의 흐름도를 개정된 지침에 맞게 수정함

본조사위원회 구성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연구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9조 1항), 본조사 기구는 본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본조사 수행의 방법

“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따른다.

이의제기와 변론 기회의 제공 및 기록, 보고

본조사위원회는 판정 이전에 반드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의제기 및 소명 등 변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제20조 2항”). 이는 판정 이후의 이의신청과 그에 따른 재조사 수행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진실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잘못된 조사 결과의 확정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판정 이전의 최종 이의제기 및 소명은,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대로 판정 단계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본조사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실시하도록 한다. 만약 최종 이의제기 및 소명 과정을 거친 이후에 새로운 조사내용을 조사결과에 추가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 과정을 다시 거치도록 한다. 교육부에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과 이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제29조 조사결과의 제출”). 이는 조사위원회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의제기 및 소명을 자의적으로 묵살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4. 판정 (제24조, 제25조)



제24조(판정)

-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의 의의

판정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등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이다. 판정 단계가 종료되면 연구기관은 조사결과를 임의로 반복할 수 없으며, 차후 조사결과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판정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양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30일 이내의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정의 기한

판정은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정 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조사 절차가 가급적 신속하게 종료되도록 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시간과 비용 상의 손실, 연구실 출입과 연구 관련 자료 사용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단, 해당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의 복잡성과 규모의 방대성으로 인해 6개월 이내에 판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 제보사실 이관 기관(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연구기관 자체 조사위원회가 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했을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필요한 기간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해당 연구기관이 적절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25조(이의신청 등)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통보 및 이의 제기

예비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예비조사 결과, 연구기관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사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제보자에게 그 사실만을 통보하여도 무방하며, 본조사가 기각되었을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제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본조사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조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통보 후 3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수리 또는 기각을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리가 결정되면 연구기관 자체 재조사와 판정이 수행되며, 기각이 결정되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8조(재조사)”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28조(재조사)”는 “제25조(이의신청)”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이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해당 연구기관 및 조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 검증 업무가 교육부에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중앙 정부 기관이 아닌 개별 연구기관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 판정 효력의 성립을 위한 요건

이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있어서 그 효력의 조건으로 조사위원의 “과반수 찬성”, “3분의 2 이상 찬성”, “만장일치” 등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나 요건을 제시하지 않으며 해당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판단할 것을 권장한다.



제8장

검증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116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 117
3. 조사결과의 보고 | 120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 123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 125

제8장

검증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개정 지침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신설된 것으로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하여 판정 및 이의신청 결과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조치 이외에도,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등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의 예로는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연구 결과물의 교정 및 철회, 공개 사과, 현재와 향후 연구 활동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등이 있다. 이는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등이 내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내부 규정과 법령,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학등 개별 기관 내부의 공모나 묵인에 의해 연구부정행위가 방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기록의 범위

제31조 제1항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이라 함은 다음을 모두 포함한다.

- 1)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에서의 각종 회의 내용
- 2) 제보자 · 피조사자 · 참고인 · 증인과의 면담 내용
- 3) 제보자 · 피조사자 · 참고인 · 증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증거물
- 4) 전화 ·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 내용
- 5) 제보자 ·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내용
- 6) 전문가 검토 · 자문의견
- 7) 예비조사 · 본조사 결과보고서



기록 보존의 이유

- 조사의 투명성 · 책임성 · 신뢰성 제고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이의신청 시 재조사 과정에서 활용
-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책 수립시 활용
-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례의 공유를 통한 향후 연구부정행위에 체계적 대응
- 연구부정행위의 현황 파악과 검증 과정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유형 정립 및 효율적인 검증 방법 도출



정보의 공개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비공개 사항을 명심한다.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 이후에 공개한다. 이는 조사 진행 과정 또는 판정 이전에 조사 결과나 조사 위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보고서 공개 시에는 신원정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등)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전문가 등의 신원 정보는, 조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피해를 입은 측이 보복 등을 목적으로 알고자 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한다. 타 연구기관에서 진실성 검증을 위해 해당 사안의 전문가 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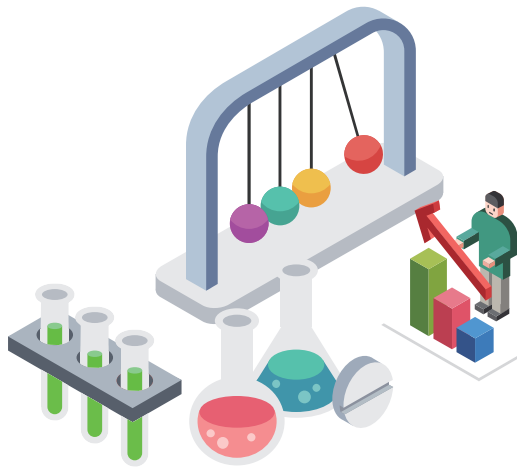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와 조사 과정에 대한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비공개가 연구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예를 들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구성의 특징에 관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사위원의 실명은 연구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성별, 나이, 직위 정도만 공개한다).

증인, 참고인, 자문인의 악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명예훼손 고소 등을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진술을 한 자의 실명을 요구할 경우, 요구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가장 최선의 예방책은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단계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를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다.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 내부, 상급 기관, 교육부 및 언론 등에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9조 3항”).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위반사실 확인 후 사법당국,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관련기관 및 경찰에 즉시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기관 내부 및 언론 등에 공개한다.
-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조사결과의 보고 (제29조)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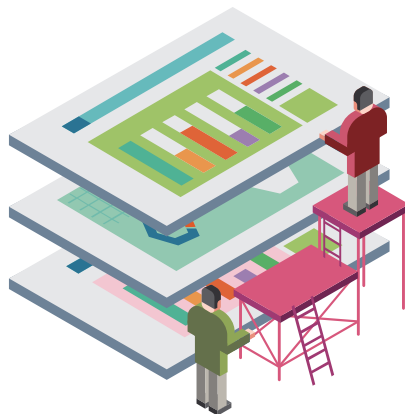
-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의 의의

교육부는 각 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정직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데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므로, 교육부는 연구기관 자체의 검증 결과 보고를 통해 소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 실행하여야 한다.

보고 회수 및 시점

보고 회수는 예비조사만을 수행한 경우(본조사 기각)는 1회, 본조사를 수행한 경우는 2회(예비조사 결과, 본조사 결과)이다. 예비조사 결과는 예비조사 완료 후, 본조사 결과는 판정 후 각각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전 지침에는 10일 이내였으나, 연구기관이 조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사실 확인과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가. 제보의 내용

누가(의명 기재 요망),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 등을 제보하는지 간략하게 요약

나. 조사결과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유형 및 세부내용 등과 그 진위 여부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본조사 실시 여부 및 그 사유(시효의 적절성, 제보내용 및 증거자료의 구체성·명확성 등에 따른 본조사 수행 필요성 여부 기재) 등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본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 명단(성명/성별/나이/전공/직위 등 기재)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피조사자가 해당 연구에서 맡은 역할과 참여도, 그리고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 내용과 피조사자와의 관련성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연구부정행위 혐의 여부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물, 진술 및 면담내용 등 조사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의 신원정보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본조사 과정에서 판정 이전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 및 변론내용과 이를 검토하여 최종 조사결과에 반영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30조)

후속조치의 종류(제26조, 제30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가 취하는 조치(제30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그 밖에 대학등 연구기관 자체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과제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취하는 조치(제2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로 구분된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는 제30조와 제26조가 모두 적용되며, 그 밖의 연구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는 제26조만 적용된다.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제재하는 제30조는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한다.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기관 자체검증 이후 교육부의 역할(제30조 2항)

교육부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판정 후 30일 이내)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조사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연구 협약에 근거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제30조 1항)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사업 과제에만 적용된다.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 1)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 2)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 3)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대학등 연구기관의 징계 요구
- 4) 향후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28조)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학등 연구기관의 자체 후속조치

대학등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지침의 “제3조(적용 범위)”에 근거하여,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이 지침을 직접 적용하거나, 이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을 검증하여 판정 및 이의신청 결과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조치 이외에도,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은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다.

대학등의 장은 연구기관 자체의 규정에 따라 현행 법령과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원인이 되는 과실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 조치 사이에 적절한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학등의 주요 관계자와 피조사자 사이의 친분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유약하거나 강경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제28조(재조사)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개인의 후속조치(재조사)

“제19조”(예비조사)“에 따라 연구기관은 예비조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제20조(본조사)”에 따른 본조사 결과도 예비조사에 준하여 조사 종료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제25조(이의신청)”에 따라 연구기관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25조(이의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연구기관 조사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기관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후 수리 또는 대학등 연구기관의 판정 절차나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 재조사 착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APA Style, “Quick Answers—References”, <http://www.apastyle.org/learn/quick-guide-on-references.asp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Chicago Manual of Style, “Chicago-Style Citation Quick Guide”, http://www.chicagomanualofstyle.org/tools_citationguide.html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Ping Sun, “China’s Efforts for Promoting Research Integrity”, AAAS Professional Ethics Report, Vol. XXIII, No. 4, Fall 2010.
-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지침”, http://eng.korea.ac.kr/down/pdf/rules/03_3/3-3-16c.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교육과학기술부(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http://web.dongseo.ac.kr/~sanhak/img/sub04_05.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대한민국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322#0000>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2008),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미국 ORI Historical Background, <http://ori.hhs.gov/historical-background>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미국 ORI 관련 법령 규정 “42 CFR Part 50” 및 “42 CFR Part 93”의 원문, https://ori.hhs.gov/sites/default/files/42_cfr_parts_50_and_93_2005.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연구윤리정보센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http://www.cre.or.kr/board/?board=regulation&no=1384633>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http://www.cre.or.kr/board/?board=regulation&no=1383958>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영국 UKRIO information, <http://www.ukrio.org/wp-content/uploads/UKRIO-leaflet-2013-web-version.pdf> (검색일: 2015년 2월 20일).
- 영국 UKRIO 연구부정행위 규정 조항, <http://www.ukrio.org/publications/code-of-practice-for-research/3-0-standards-for-organisations-andresearchers/3-16-misconduct-in-research/>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영국 브리스톨대학 연구윤리 정책 및 규정, <http://www.bristol.ac.uk/secretary/studentrulesregs/researchmisc.html>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PE) 가이드라인,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이원용(2010),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분석 연구”, 한국연구재단.

- 이인재(2007), “인문·사회과학분야 표절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인재(2008),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 조사·분석”, 한국연구재단.
- 이인재(2008), “대학에서의 글쓰기 윤리교육”, 『작문연구』 6권, pp.129-159.
- 이인재(2011), “바람직한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연구윤리의 이해”, *Endocrinol Metab* 26(1): 12-24, March 2011.
- 이인재(2012), “연구윤리활동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인재(2013), “국내 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연구재단.
- 이인재(2015), 『연구윤리 이해와 실천』, 서울:동문사.
- 일본 SCJ 발표 연구진실성 규정,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20-s3e-1.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일본 SCJ 연구진실성 진흥 노력, <http://www.scj.go.jp/en/report/code.html>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일본 문부과학성(2014), “研究活動における不正行為への対応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08/1351568.htm, 영문판 <http://www.mext.go.jp/english/topics/1360017.htm>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정희모(2008), 『대학 글쓰기』, 서울: 삼인.
- 조황희(2006),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캐나다 PRCR 소개, <http://www.rcr.ethics.gc.ca/eng/inde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캐나다 PRE 소개, <http://www.pre.ethics.gc.ca/eng/index/>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캐나다 연구진실성 규정 “Tri-agency Framework”의 “3. Breaches of Agency Policies by Researchers” 및 “4.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s” 참조. <http://www.rcr.ethics.gc.ca/eng/policy-politique/framework-cadre/>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한국연구재단(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 한국연구재단(2014),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 호주 “Australian Code for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https://www.nhmrc.gov.au/_files_nhmrc/publications/attachments/r39.pdf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호주 “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및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들, <http://www.nhmrc.gov.au/research/responsible-conduct-research-0> (검색일: 2015년 2월 7일).
- 호주 ARIC, <http://www.arc.gov.au/australian-research-integrity-committee-aric> 및 <http://www.nhmrc.gov.au/research/responsible-conduct-research/australian-research-integrity-committee> (검색일: 2015년 2월 7일).



부 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 132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 144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 | 158

부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교육부 훈령 제 153호, 2015. 1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 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 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결과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 가. 제보의 내용
 - 나. 조사결과
 -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부록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주요 개정 사항

기 준	개 정	비 고	주요내용
1조(목적)	1조(목적)	개정	연구부정행위 방지 목적 추가
	2조(정의)	신설	주요 용어 정의
2조(적용대상)	3조(적용대상 및 방법)	개정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교육부이외 정부기관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3조(적용범위)	4조(적용범위)	유지	-
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개정 (확대)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설명 구체화 '부당한 중복게재' 항목 신설
5조(연구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개정 (분리)	기준안을 분리하여 세분화
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지	-
7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삭제 (타 조항으로 계승) 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항 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항	삭제	-
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개정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선정자의 연구윤리 교육이수 의무 신설
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개정	자체규정의 포함 사항으로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추가
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28조(재조사) 2항	개정 (분리)	내용 분리 및 위치조정
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유지	-
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유지	-
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의 예외)	개정 (분리)	내용 분리 및 위치조정 13조의 전문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명확화

기 존	개 정	비 고	주요내용
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개정 (분리)	구체적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 제시
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개정	일부 항의 타조항 (제16조 제2항) 설치로 삭제
16조(예비조사)	19조(예비조사)	유지	-
17조(본조사)	20조(본조사)	유지	-
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개정	조사위원 중 연구분야 전문가에 외부 전문가 포함 규정
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유지	-
20조(조사위원회의 권한)	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유지	-
21조(판정)	24조(판정)	유지	-
22조(이의신청 등)	25조(이의신청 등) 28조(재조사)	개정 (분리)	재조사 요청을 이의신청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개정 및 30일의 재조사 요청기간 설정
23조(조사결과의 제출)	29조(조사결과의 제출)	개정	대학 등의 조사결과 제출을 조사종료 후 30일 이내로 연장 (기존 10일)
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부분 개정	후속조치에 학술진흥법 상 근거 명시
	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신설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자체 조치 규정
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유지	-
26조(업무의 위탁)	32조(업무의 위탁)	유지	-
27조(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요청)	삭제	삭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및 권한에 대한 조항으로서 삭제
28조(재검토 기한)	33조(재검토 기한)	유지	-
부칙 1조(시행일)	부칙 1조(시행일)	유지	-
	부칙 2조(소급 적용)	신설	지침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 소지 제거



▣ 개정 신·구 대비표

기 존	개 정	비 고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인 학술진흥법 제15조 제시의 순서조정 • 연구윤리의 확보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함
<p>〈 신설 〉</p>	<p>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를 통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명확화
<p>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와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9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정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기존 지침 대비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확대 - 자체적 지침 없는 경우, 자체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활동에도 직접 적용가능 • 적용방법: 적용대상에 따라 ‘적용한다’와 ‘준용할 수 있다’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적용 방법에서 ‘준용할 수 있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서술

기 존	개 정	비 고
<p>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 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p>	<p>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 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p>	
<p>제5조(연구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기관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p>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p>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5조를 개정 제5조(연구자), 제6조(대학 등), 제7조(전문기관)로 분리하여 세분화



부 록

기 존	개 정	비 고
<p>제7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7조는 개정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항의 5호, 6호, 7호에 반영되어 있으며, 개정 제12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더욱 구체적인 제약 기술
<p>제8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p>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8조 제1항의 '연구윤리 교육 실시 의무'는 개정 제6조 제5항, 제7조 제2항의 대학과 전문기관의 교육 실시 의무로 조정 • 교육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를 신설
<p>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제1항의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은 협약 체결 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p>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p> <p>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항목 추가 • 기존 제9조 제2항은 개정 제3조(적용 대상 및 방법)에 적용대상별 적용 방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기 존	개 정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6.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p>② 자체규정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p>제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윤리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p>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p>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정 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22조제 3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기관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기관 등의 장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한 경우 	<p>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 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p>• 기존 제3항은 개정 제28조(재조사) 제2항으로 대체 (내용 위치 조정)</p>



기 존	개 정	비 고
<p>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p> <p>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p>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p>	<p>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p> <p>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정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p>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제3호 ‘표절’ 항목을 4가지 유형으로 설명 • 제4호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항목을 ‘부당한 저자표시’로 용어를 수정하고, 3가지 유형으로 설명 • 제5호에 ‘부당한 중복게재’ 항목 신설

기 존	개 정	비 고
<p>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p> <p>④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p>	<p>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p> <p>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p>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 기존 제4조 제4항을 별도 분리하고,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제시</p>
<p>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p> <p>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p> <p>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p> <p>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p> <p>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p>	<p>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p> <p>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p> <p>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p> <p>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p> <p>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p>	



기 존	개 정	비 고
<p>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p> <p>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p> <p>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p> <p>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p> <p>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p> <p>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p> <p>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 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p> <p>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p> <p>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13조 제2항은 개정 제27조로 이동 • 개정 제16조 제2항의 ‘조사위원회’ 설치 기준 제15조 제2항에서 이동
<p>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p> <p>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p> <p>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p> <p>③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p> <p>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p> <p>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p> <p>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기 존	개 정	비 고
<p>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p> <p>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p> <p>③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p>	<p>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p> <p>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p> <p>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p> <p>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15조 제1항 제3항은 유지(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 기존 제2항은 개정 제16조 제2항 설치로 삭제
<p>제16조(예비조사)</p> <p>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p> <p>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p> <p>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p>	<p>제19조(예비조사)</p> <p>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p> <p>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p> <p>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p>	
<p>제17조(본조사)</p> <p>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조사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p>	<p>제20조(본조사)</p> <p>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p>	



부 록

기 준	개 정	비 고
<p>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p> <p>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p>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p> <p>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18조 제1항 단서 삭제 • 조사 위원 중 연구 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 공정성과 객관성 향상
<p>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p>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p>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p> <p>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20조(조사위원회의 권한)</p> <p>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p>	<p>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p> <p>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p>	

기 존	개 정	비 고
<p>제21조(판정)</p> <p>① 판정은 해당기관의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4조(판정)</p> <p>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p> <p>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2조(이의신청)</p> <p>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5조(이의신청)</p> <p>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 기존 제22조 제항은 개정 제28조(재조사)로 조정</p>
<p>〈 신설 〉</p>	<p>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p> <p>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 최종적으로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조치 이외에도,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 (개별 기관 내부의 공모나 묵인에 의한 연구부정행위의 방조 방지)</p>
<p>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p> <p>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p> <p>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 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p> <p>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 기존 제13조 제2항의 '전문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명확화</p>



부 록

기 존	개 정	비 고
<p>제22조(이의신청)</p> <p>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8조(재조사)</p> <p>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제22조 제3항의 '이의신청과 별도로' 가능한 재조사 요청을 이의신청을 거친후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수령 후 30일의 재조사 요청기한 설정 개정 제28조 제2항은 기존 제10조 제3항을 이동·조정
<p>제23조(조사결과와 제출)</p> <p>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p>③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 사항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p>제29조(조사결과와 제출)</p> <p>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조사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본조사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제23조 제1항의 조사결과 제출이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10일의 기간이 축박하다는 대학의 요구 반영)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항목이 "예비 조사의 경우"와 "본조사의 경우"로 구분되어 상세화

기 존	개 정	비 고
<p>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p> <p>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협약 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p> <p>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p> <p>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p> <p>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p> <p>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p> <p>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26조(업무의 위탁)</p> <p>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23조제3항과 관련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후속조치 및 조사, 제25조제1항과 관련한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2조(업무의 위탁)</p> <p>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7조(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요청)</p> <p>교육부장관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및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삭제
<p>제28조(재검토 기한)</p> <p>「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33조(재검토 기한)</p> <p>「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칙 제2조 신설로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용되는 관례에 따르게 함으로써, 지침 적용 시점에 대한 논란의 소지 제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³⁰⁾

I. 올바른 인용

◆ 인용의 의미와 목적

일반적으로 인용은 인용 부호를 적절히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학술 연구에서 인용과 표절은 상반된 개념으로, 인용은 학문 발전을 위해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이어주는 긍정적인 가교의 역할을 한다.

자신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정희모, 2008:229).

- ▶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 ▶ 공통되거나 상반되는 견해를 인용함으로써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기 위해 권위 있는 의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전자는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다른 연구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글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장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이다.

올바른 인용은 논문과 보고서 작성 때 타인의 글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윤리이고 예의이다. 인용은 연구자가 원저자에게 그의 글과 아이디어에 대해 인정(credit)을 한다는 표시이며, 표절의 문제없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인용은 원래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저자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을 쉽게 해주며, 인용을 통해 독자는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저작물에서 인용을 할 때 적절하게 해야 한다.

30) 이인재(2015), pp. 288-311을 활용함

◆ 인용의 원칙

인용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 ▶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절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을 쓸 때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또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인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되 그것이 공정한 이용(fair use)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정한 이용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 ▶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 ▶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적 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인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올바른 인용 방식이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될 수는 없을 것이고 국가마다 학문 분야별로 서로 다르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 태도를 가지고 인용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내가 착안해 낸 단어나 어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활용할 때는 어디에서 참고했거나 따온 것인지를 정당한 방식으로 밝혀, 원저작자에게 진 빚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고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이것에 대한 통상적인 합의가 바로 인용이다. 이처럼 인용은 글을 쓸 때 원저작자에게 진 빚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감사)하는(acknowledge indebtedness) 정당한 방법인 것이다.

연구자가 알고 지켜야 할 올바른 인용의 원칙과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 ▶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한다.
- ▶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한다.



출처표시의 원칙과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출처표시의 방법은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대학 및 학술 단체가 정한 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동일한 논문이나 책 내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 말바꿔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 ▶ 논문이나 단행본에 인용된 내용의 기본적인 서지사항들(저자명/단행본이나 논문의 제목/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또는 학술지의 권, 호수, 출판연도, 페이지)을 직접 확인하여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한다.
- ▶ 가급적 1차문헌(원문)을 인용하되, 불가피하게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고 인용하게 되었을 경우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연구자가 글을 쓸 때, 2차 문헌에 있는 원문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할 때, 그 원문의 내용을 직접 찾아 확인해 보고 특히 2차 문헌의 저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예를 들면,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경우, 2차 문헌 저자가 원문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였거나 독특한 표현으로 요약 및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 등) 원문과 2차 문헌의 출처표시를 모두 해야 한다. 왜냐하면 2차 문헌의 저자를 통해 원문을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2차 문헌의 저자가 기여한 업적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표시로 2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바꿔쓰기를 위한 제언〉

◎ 말바꿔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 주의 깊게 꼼꼼히 읽는다.
- 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 원전을 덮거나 멀리한다.
- 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
- 필자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 말바꿔쓰기의 기본 원칙

- 원전과 비슷한 어휘 수를 유지한다.
- 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
- 원전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원저자는)~주장한다. 설명한다’ 등으로 나타낸다.

II. 인용 방법

연구자는 논문을 쓰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는 정당한 활용일 때 한해서이다.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타인의 아이디어나 글을 정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인용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면 표절 의혹을 받게 된다. 표절 의혹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이 인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용을 해야 할까? 인용 방법은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인용은 타인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를 말하며, 큰 따옴표로 인용문을 표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인용 분량이 3~4 줄 이상으로 길 경우,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바꾸어 인용된 문단임을 나타낸 후(indentation),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예시 “일반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란, 전문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좋은 시민 정신이라 요약·정의할 수 있다.”

1) 홍길동 외 3명, <연구윤리 소개>, 교육인적자원부, 2006, p. 3.

간접 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잘 소화하여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풀어 쓴 것으로, 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 견해에 따르면, -의 견해를 정리하면, 혹은 -는 이라고 말한다.’와 같이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원저자의 생각을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예시 홍길동 외 3명에 따르면, 책임 있는 연구수행이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 전문적 영역의 좋은 시민 정신이라 한다.

1) 홍길동 외 3명, <연구윤리 소개>, 교육인적자원부, 2006, p. 3.

Ⅲ.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 방법: 시카고 스타일과 APA 방식을 중심으로

논문이나 단행본의 본문에서 활용된 자신 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문헌에서 그 서지사항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한 직·간접 인용과 참고문헌에 사용되는 출처표시 방법을 시카고 스타일과 APA 방식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인용문과 참고문헌의 출처표시 방법은 해당 학문 분야와 연구자가 선호하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저자명, 저서(논문)명, 출판사, 출판연도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다.

A. 시카고 스타일의 인용 표시법³¹⁾

가.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 방식(인문학에서 주로 이용)

외국인 저자 이름은 각주에서는 ‘이름+성’으로 표시하고, 참고문헌에서는 ‘성+이름’으로 표시함에 유의한다. (참고문헌 목록을 성 순서로 정렬하기 위함이다.)

책이름은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논문 제목은 큰따옴표(“”)로 표시한다.

“1)”은 처음 인용할 때, “2)”는 다시 인용할 때를 나타낸다.

처음 인용할 때는 full name을 밝히고, 다시 인용할 때는 성(last name)만 밝힌다.

1. 저자 1명

저자이름, 책이름, (도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1) Michael Pollan,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New York: Penguin, 2006), 99–100.

2) Pollan, *Omnivore’s Dilemma*, 3.

참고문헌 표시방식:

Pollan, Michael.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New York: Penguin, 2006.

31) Chicago Manual of Style 웹사이트(www.chicagomanualofstyle.org)의 “Chicago-Style Citation Quick Guide” 문서를 참고함

2. 저자 2명

저자이름 and 저자이름, ...

- 1) Geoffrey C. Ward and Ken Burns,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2007), 52.
- 2) Ward and Burns, *The War*, 59–61.

참고문헌 표시방식:

Ward, Geoffrey C., and Ken Burns.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2007.

3. 저자 3명

저자이름, 저자이름 and 저자이름, ...

- 1) Michael Pollan, Geoffrey C. Ward and Ken Burns,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2007), 52.
- 2) Pollan, Ward and Burns, *The War*, 59–61.

참고문헌 표시방식:

Pollan, Michael, Geoffrey C. Ward and Ken Burns.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2007.

4. 저자 4명 이상

대표 저자 1명만 이름을 밝히고, “et al.”을 붙인다.

- 1) Dana Barnes et al., *Plastics: Essays on American Corporate Ascendance in the 1960s...*
- 2) Barnes et al., *Plastics...*

참고문헌 표시방식:

Barnes, Dana, et al., *Plastics: Essays on American Corporate Ascendance in the 1960s...*

5. 원저자를 알 수 없는 편집서, 번역서

편집자, 번역자의 이름만 밝히고, “ed.” 또는 “trans.”를 붙인다.

- 1) Richmond Lattimore, trans., *The Iliad of Hom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91–92.
- 2) Lattimore, *The Iliad of Homer*, 24.

참고문헌 표시방식:

Lattimore, Richmond, trans. *The Iliad of Hom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6. 원저자를 알 수 있는 편집서, 번역서

원저자의 이름과 책제목을 먼저 밝히고, 편집자나 번역자는 나중에 밝힌다. 편집자나 번역자의 이름 앞에는 “ed.” 또는 “trans.”를 붙인다.

- 1) Gabriel Garcia-Marquez, *Love in the Time of Cholera*, trans. Edith Grossman (London: Cape, 1988), 242–55.
- 2) Garcia-Marquez, *Love in the Time of Cholera*, 33.

참고문헌 표시방식:

Garcia-Marquez, Gabriel. *Love in the Time of Cholera*. Translated by Edith Grossman. London: Cape, 1988.

7. 책(또는 논문집)의 일부분(소논문, 장 또는 절)을 인용

소논문 저자의 이름과 제목을 먼저 밝히고, 책이름과 총괄 편집자는 나중에 밝힌다. 총괄 편집자의 이름 앞에는 “ed.”를 붙인다.

- 1) John D. Kelly, “Seeing Red,” in *Anthropology and Global Counterinsurgency*, ed. John D. Kelly et 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77.
- 2) Kelly, “Seeing Red,” 81–82.

참고문헌 표시방식:

Kelly, John D. “Seeing Red.” In *Anthropology and Global Counterinsurgency*, edited by John D. Kelly, Beatrice Jauregui, Sean T. Mitchell, and Jeremy Walton, 67–8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위 사례를 보면, ‘각주 1)’에서는 논문의 77페이지만을, ‘각주 2)’에서는 논문의 81–82 페이지만을 인용했음을 밝혔고, ‘참고문헌’에는 인용된 논문의 전체 분량이 책(또는 학술지)의 67–83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8. 여러 권으로 구성된 전집(全集)의 일부를 인용할 때

원저자, 원제목, 전집제목, 전집 편집자,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등으로 밝힌다.

- 1) Quintus Tullius Cicero,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 in *Rome: Late Republic and Principate*, ed. Walter Emil Kaegi Jr. and Peter White, vol. 2 of *University of Chicago Readings in Western Civilization*, ed. John Boyer and Julius Kirshn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35.

위 사례를 보면 John Boyer와 Julius Kirshner가 편집한 *University of Chicago Readings in Western Civilization*라는 전집이 있고, 이 중 2권이 Walter Emil Kaegi Jr.와 Peter White가 편집한 *Rome: Late Republic and Principate*라는 책이며, 이 책 안에 Cicero가 저술한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 Cicero,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 35.

참고문헌 표시방식:

Cicero, Quintus Tullius.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 In *Rome: Late Republic and Principate*, edited by Walter Emil Kaegi Jr. and Peter White. Vol. 2 of *University of Chicago Readings in Western Civilization*, edited by John Boyer and Julius Kirshner, 33–4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Originally published in Evelyn S. Shuckburgh, trans., *The Letters of Cicero*, vol. 1 (London: George Bell & Sons, 1908).

위 사례를 보면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는 *The Letters of Cicero*의 재인용임을 알 수 있다.

9. 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 써준 서문, 해설, 추천사 등을 인용할 때

1) James Rieger, introduction to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by Mary Wollstonecraft Shell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xx–xxi.

2) Rieger, introduction, xxxiii.

참고문헌 표시방식:

Rieger, James. Introduction to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by Mary Wollstonecraft Shelley, xi–xxxv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위 사례를 보면 ‘각주 1)’에서는 서평 가운데 xx–xxi페이지만을 인용했고, 서평 자체는 xi–xxxvii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전자책 또는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때

전자책이나 인터넷 자료는 페이지를 표시하기 어려우므로, 그 출판 형태와 인터넷 주소(URL), 인터넷 접속일자, 인용된 부분의 장과 절 등을 밝혀준다.

- 1) Jane Austen,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7), Kindle edition.
- 2) Austen, *Pride and Prejudice*.

참고문헌 표시방식: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7. Kindle edition.

- 1) Philip B. Kurland and Ralph Lerner, eds.,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
- 2) Kurland and Lerner, *Founder's Constitution*, chap. 10, doc. 19.

참고문헌 표시방식:

Kurland, Philip B., and Ralph Lerner, eds.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

11. 학술지 논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호수, (발행연도), 페이지 수 순으로 밝힌다.

- 1) Joshua I. Weinstein, "The Market in Plato's Republic," *Classical Philology* 104 (2009): 440.
- 2) Weinstein, "Plato's Republic," 452–53.

참고문헌 표시방식:

Weinstein, Joshua I. "The Market in Plato's Republic." *Classical Philology* 104 (2009): 439–58.

12. 전자 출판된 학술지의 논문

전자 출판된 학술지는 DOI라는 고유 인터넷 주소를 가지므로, 논문의 DOI 주소와 인터넷 접속날짜를 밝힌다.

- 1) Gueorgi Kossinets and Duncan J. Watts, "Origins of Homophily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 (2009): 411, accessed February 28, 2010, doi:10.1086/599247.
- 2) Kossinets and Watts, "Origins of Homophily," 439.

참고문헌 표시방식:

Kossinets, Gueorgi, and Duncan J. Watts. "Origins of Homophily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 (2009): 405–50. Accessed February 28, 2010. doi:10.1086/599247.

13. 신문기사 또는 잡지의 기사를 인용할 때

필자, “기사제목-큰따옴표”, 신문이름-이탤릭, 발행일자, 페이지 수.

- 1) Daniel Mendelsohn, “But Enough about Me,” *New Yorker*, January 25, 2010, 68.
- 2) Mendelsohn, “But Enough about Me,” 69.

참고문헌 표시방식:

Mendelsohn, Daniel. “But Enough about Me.” *New Yorker*, January 25, 2010.

14. 전자 출판된 신문기사 또는 잡지의 기사를 인용할 때

필자, “기사제목-큰따옴표”, 신문이름-이탤릭, 발행일자, 인터넷 접속날짜, URL 주소.

- 1) Sheryl Gay Stolberg and Robert Pear, “Wary Centrists Posing Challenge in Health Care Vote,” *New York Times*, February 27, 2010,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www.nytimes.com/2010/02/28/us/politics/28health.html>.
- 2) Stolberg and Pear, “Wary Centrists.”

참고문헌 표시방식:

Stolberg, Sheryl Gay, and Robert Pear. “Wary Centrists Posing Challenge in Health Care Vote.” *New York Times*, February 27, 2010.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www.nytimes.com/2010/02/28/us/politics/28health.html>.

15. 서평(book review)을 인용할 때

서평자, “서평 제목”, 대상 도서, 서평 출처, 발행일자, 페이지 수 또는 섹션, URL 주소...

- 1) David Kamp, “Deconstructing Dinner,” review of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by Michael Pollan, *New York Times*, April 23, 2006, Sunday Book Review, <http://www.nytimes.com/2006/04/23/books/review/23kamp.html>.
- 2) Kamp, “Deconstructing Dinner.”

참고문헌 표시방식:

Kamp, David. “Deconstructing Dinner.” Review of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by Michael Pollan. *New York Times*, April 23, 2006, Sunday Book Review. <http://www.nytimes.com/2006/04/23/books/review/23kamp.html>.



16. 학위논문 인용

저자, “논문 제목”, (종류, 발행기관, 발행연도).

- 1) Mihwa Choi, “Contesting Imaginair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 2) Choi, “Contesting Imaginaires.”

참고문헌 표시방식:

Choi, Mihwa. “Contesting Imaginair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17. 회의 proceeding 자료 인용

저자, 글 제목 (발표 회의, 장소, 발표 날짜).

- 1) Rachel Adelman,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for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New Orleans, Louisiana, November 21–24, 2009).
- 2) Adelman, “Such Stuff as Dreams.”

참고문헌 표시방식:

Adelman, Rachel.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for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New Orleans, Louisiana, November 21–24, 2009.

18. 인터넷 자료 인용

인터넷 자료는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수시로 내용이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를 알 수 있으면 저자를 적시하고, 알 수 없으면 글의 제목을 적시한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last modified date)를 알 수 있으면 그것을 적시하고, 알 수 없으면 글쓴이가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한 날짜를 적시한다.

- 1) “Google Privacy Policy,” last modified March 11, 2009, <http://www.google.com/intl/en/privacypolicy.html>.
- 2) “Google Privacy Policy.”
- 3)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McDonald’s Corporation, accessed July 19, 2008, <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
- 4)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참고문헌 표시방식:

Google. “Google Privacy Policy.” Last modified March 11, 2009. <http://www.google.com/intl/en/privacypolicy.html>.

McDonald’s Corporation.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Accessed July 19, 2008. <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

19. 블로그/인터넷 자료에 대한 코멘트 또는 댓글을 인용

글쓴이가 누구의 블로그에, 어떤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명시한다.
댓글 필자, 댓글 올린 날짜, 댓글의 대상이 되는 블로그 주인, 블로그 게시물 제목, 블로그 제목, 블로그 게시물 날짜, 인터넷 주소...

- 1) Jack, February 25, 2010 (7:03 p.m.), comment on Richard Posner, “Double Exports in Five Years?,” The Becker-Posner Blog, February 21, 2010, <http://uchicagolaw.typepad.com/beckerposner/2010/02/double-exports-in-five-years-posner.html>.
- 2) Jack, comment on Posner, “Double Exports.”

참고문헌 표시방식:

Becker-Posner Blog, The. <http://uchicagolaw.typepad.com/beckerposner/>.

20.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인용

‘참고문헌’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편지 보낸 이, 편지의 제목 또는 성격, 편지 보낸 날짜.

- 1) John Doe, e-mail message to author, February 28, 2010.

21.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인용

저자, 글제목, 발행기관,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일련번호).

Choi, Mihwa. “Contesting Imaginair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08. ProQuest (AAT 3300426).



나. 저자-연도 우선 표시 방식 (이공계, 사회과학에서 주로 이용)

- 글 말미에 참고문헌을 표시할 때는 저자, 발행연도, 제목, 출판사... 순으로 하고, 글 안에서는 '내주' 형식으로 표시한다. 내주는 (저자의 성, 발행연도, 페이지) 순으로 표시한다. 앞뒤에 괄호를 묶어 표시한다.
- 참고문헌에서 저자 이름은 '성+이름' 순으로 한다.
- 저자 이름 뒤에는 연도가 가장 중요하며, 월/일 등은 뒤에 분리하여 표시한다.
- 다음 각 항목에서 첫 번째 사례는 참고문헌에 표시할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로 앞뒤에 괄호로 묶여 표시된 것은 글의 본문 안에서 '내주'로 표시될 경우이다.

1. 저자 1명

Pollan, Michael. 2006.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New York: Penguin.
(Pollan 2006, 99–100)

2. 저자 2명

제1저자는 '성+이름' 순으로, 제2저자는 '이름+성' 순으로 표시한다.
Ward, Geoffrey C., and Ken Burns. 2007.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Ward and Burns 2007, 52)

3. 저자 3명

제1저자는 '성+이름' 순으로, 제2저자와 제3저자는 '이름+성' 순으로 표시한다.
Ward, Geoffrey C., Michael Pollan and Ken Burns. 2007.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Ward, Pollan and Burns 2007, 52)

4. 저자 4명 이상

제1저자 뒤에 'et al'로 표시한다.
(Barnes et al. 2010)

5. 원저자를 알 수 없고, 편집자, 번역자가 있는 경우

원저자(성+이름), trans. 또는 ed. 발행연도. 제목. 발행기관.

Lattimore, Richmond, trans. 1951. *The Iliad of Hom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ttimore 1951, 91–92)

6. 원저자를 알 수 있고, 편집자, 번역자가 있는 경우

원저자(성+이름). 발행연도. 제목. 편집자 또는 번역자(이름+성). 발행기관.

Garcia-Marquez, Gabriel. 1988. *Love in the Time of Cholera*. Translated by Edith Grossman. London: Cape.
(Garcia-Marquez 1988, 242–55)

7. 책(또는 논문집)의 일부분(소논문, 장 또는 절)을 인용하는 경우

논문저자(성+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책제목. 총괄 편집자(이름+성). 논문의 전체 페이지, 발행기관.

Kelly, John D. 2010. “Seeing Red.” In *Anthropology and Global Counterinsurgency*, edited by John D. Kelly, Beatrice Jauregui, Sean T. Mitchell, and Jeremy Walton, 67–8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elly 2010, 77)

8. 여러 권으로 구성된 전집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부분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부분 제목. 책(날권) 제목. 책(날권) 편집자(이름+성). 전집 제목. 전집 편집자(이름+성). 인용된 부분의 전체 페이지수. 발행기관. 기타사항...

Cicero, Quintus Tullius. 1986.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 In *Rome: Late Republic and Principate*, edited by Walter Emil Kaegi Jr. and Peter White. Vol. 2 of *University of Chicago Readings in Western Civilization*, edited by John Boyer and Julius Kirshner, 33–4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Evelyn S. Shuckburgh, trans., *The Letters of Cicero*, vol. 1 (London: George Bell & Sons, 1908).
(Cicero 1986, 35)

9. 책의 원저자와 다른 사람이 써준 서문, 해설, 추천사 등의 인용

서문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책 제목. 책 저자(이름+성). 페이지수. 출판사.

Rieger, James. 1982. Introduction to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by Mary Wollstonecraft Shelley, xi–xxxv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eger 1982, xx–xxi)



10. 전자출판된 책의 인용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제목. 발행기관. 전자출판의 형태. URL 주소.

Austen, Jane. 2007.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Penguin Classics. Kindle edition. (Austen 2007)

제1저자는 '성+이름'으로, 제2저자는 '이름+성'으로 표시한다.

Kurland, Philip B., and Ralph Lerner, eds. 1987.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 (Kurland and Lerner, chap. 10, doc. 19)

11. 학술지 논문 인용

논문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회수: 전체 페이지수.

Weinstein, Joshua I. 2009. "The Market in Plato's Republic." *Classical Philology* 104:439–58. (Weinstein 2009, 440)

12. 인터넷 또는 전자 출판된 학술지 논문 인용

전자 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DOI 번호를 부여받는다.

논문 저자(제1저자는 성+이름, 제2저자는 이름+성).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회수: 전체 페이지 수. 접속날짜. DOI 번호.

Kossinets, Gueorgi, and Duncan J. Watts. 2009. "Origins of Homophilia in an Evolving Social Net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5:405–50. Accessed February 28, 2010. DOI:10.1086/599247. (Kossinets and Watts 2009, 411)

13.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 인용

글쓴이(성+이름). 발행연도. "기사제목". 신문제목, 발행날짜.

Mendelsohn, Daniel. 2010. "But Enough about Me." *New Yorker*, January 25. (Mendelsohn 2010, 68)

14. 전자 출판된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 인용

글쓴이(성+이름). 발행연도. "기사제목". 신문제목, 발행날짜, 인터넷 접속날짜, URL 주소.

Stolberg, Sheryl Gay, and Robert Pear. 2010. "Wary Centrists Posing Challenge in Health Care Vote." *New York Times*, February 27. Accessed February 28, 2010. <http://www.nytimes.com/2010/02/28/us/politics/28health.html>. (Stolberg and Pear 2010)

15. 서평 인용

서평자(성+이름). 발행연도. “서평제목”. 대상이 된 책의 제목. 대상이 된 책의 저자. 서평이 실린 신문 제목. 발행날짜. 페이지 수 또는 섹션. URL 주소.

Kamp, David. 2006. “Deconstructing Dinner.” Review of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by Michael Pollan. *New York Times*, April 23, Sunday Book Review. <http://www.nytimes.com/2006/04/23/books/review/23kamp.html>. (Kamp 2006)

16. 학위논문 인용

논문저자(성+이름). 발행연도. “논문제목”. 발행기관.

Choi, Mihwa. 2008. “Contesting Imaginaires.”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Choi 2008)

17. 회의 등의 proceeding 자료 인용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글 제목”. 발표된 회의에 대한 설명. 장소. 발표일자(회의기간).

Adelman, Rachel. 2009. “Such Stuff as Dreams Are Made 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for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New Orleans, Louisiana, November 21–24. (Adelman 2009)

18. 인터넷 자료 인용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은 저자나 글을 쓴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이 올라온 사이트(사이트의 공식 운영주체)가 글의 저자를 대신하며, 글이 쓰여진 날짜를 알 수 있다면 적시하되, 알 수 없다면 “글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last modified date),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한 날짜를 적시한다.

Google. 2009. “Google Privacy Policy.” Last modified March 11. <http://www.google.com/intl/en/privacypolicy.html>. (Google 2009)

McDonald’s Corporation. 2008. “McDonald’s Happy Meal Toy Safety Facts.” Accessed July 19. <http://www.mcdonalds.com/corp/about/factsheets.html>. (McDonald’s 2008)



19. 블로그 코멘트 또는 댓글의 인용

댓글 작성자(성+이름), 댓글 작성연도, 댓글이 달린 블로그의 글제목, 댓글이 달린 블로그 전체 제목, 댓글 작성일자, URL 주소.

Posner, Richard. 2010. “Double Exports in Five Years?” The Becker-Posner Blog, February 21.

<http://uchicagolaw.typepad.com/beckerposner/2010/02/double-exports-in-five-years-posner.html>. (Posner 2010)

20.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인용

– 참고문헌에는 표시하지 않으므로, 글 본문 안에서 괄호로 묶어 내주 형식으로만 표시한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자와 날짜를 표시한다.

– 예시: (John Doe, e-mail message to author, February 28, 2010) 또는 (John Doe, pers. comm.)

– ‘pers. comm.’은 ‘personal communication’의 약자이다.

21.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인용

저자(성+이름), 발행연도, “글제목”. 발행기관, 데이터베이스 이름 (일련번호).

Choi, Mihwa. 2008. “Contesting Imaginaires in Death Rituals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ProQuest (AAT 3300426).

B. APA 스타일 주석 표시와 참고문헌 인용 방법³²⁾

1. 일반적인 인용 표시

내주 표시: (저자의 성, 발행연도) 형식으로 한다.

저자의 이름이 없으면 (책제목, 발행연도) 형식으로 한다. 책제목이 길면, 약칭을 사용하며, 책제목은 이탤릭체로, 논문제목은 큰따옴표로 표시한다.

발행연도가 없으면, (저자의 성, n.d.)로 표시한다. ('n.d.'는 'no date'의 약자)

2. 인터넷 자료 인용

내주 표시: 본문 안에 저자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면 괄호 안에 URL 주소만 밝힌다.

Gussie Fink-Nottle has set up a discussion forum for newt fanciers (<http://gfnngg.livejournal.com/>).

다시 인용할 때는 (저자의 성, 연도)만 언급한다.

He said that ... (Fink-Nottle, 2014).

참고문헌 표시: 성, 이름, (발행연도), 글의 제목(글의 형식), URL 주소.

Author, A. (date). Title of document [Format description].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3. 전자책의 인용 표시

전자책은 URL 주소나 DOI 주소를 밝힌다. 가능하다면 페이지수도 밝힌다.

전자책을 참고문헌에 표시:

Author, A. (date). Title of book.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Author, A. (date). Title of book. doi:xxxxxxxxxxxx.

편집된 전자책(또는 논문집)의 일부분(소논문, 장, 절)을 참고문헌에 표시:

Author, A. (date). Title of chapter. In E. Editor (Ed.), Title of book (pp. xx–xx).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Author, A. (date). Title of chapter. In E. Editor (Ed.), Title of book (pp. xx–xx).

doi:xxxxxxxxxx.

32) APA Style 웹사이트(www.apastyle.org)의 "Quick Answers—References" 문서를 참고함

4. 인터뷰 인용 표시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 인터뷰임을 밝히는 언급, 인터뷰 날짜 등을 밝힌다.
(G. Fink-Nottle,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5, 2011)

5.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인용 표시

APA에서 명확히 정한 규칙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제안되고 있다.

개인 SNS의 내주 표시: 페이스북, 트위터 URL을 밝힌다.

Obama uses Twitter (<http://www.twitter.com/barackobama>) and Facebook (<http://www.facebook.com/barackobama>) to keep citizens up to speed on his initiatives...

개인 SNS의 참고문헌 표시: 글 작성자, 날짜, 글의 형식, URL 주소.

Barack Obama. (2009a, July 15). Launched American Graduation Initiative to help additional 5 mill. Americans graduate college by 2020: <http://xxxxxxxxxx> [Twitter post].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Barack Obama. (2009b, October 9). Humbled. <http://xxxxxxxxxx> [Facebook update].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조직/집단 SNS의 참고문헌 표시: 글 작성자(조직 이름 또는 페이지 제목), 작성연도, SNS 형식, 글 확인날짜, URL 주소.

Love Jordan. [2009] In Facebook [Fan page]. Retrieved March 17, 2010, from <http://www.facebook.com/xxxxxxxxxx>.

위의 사례에서 “Love Jordan”은 페이스북 ‘팬 페이지’의 제목이다.

When I was your age, Pluto was a planet. [2009]. In Facebook [Group page]. Retrieved December 16, 2009, from <http://www.facebook.com/xxxxxxxxxx>.

위의 사례에서 “When I was your age, Pluto was a planet”은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의 제목이다.

글의 작성연도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n.d.)로 표시하며, 비교적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ca. 2009]와 같은 형식으로 쓴다.

6. 유튜브 동영상 인용

동영상 올린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

Surname, personal name. [Screen name]. (year, month day). Title of video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xxxxxxxxxx>.

동영상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screen name을 맨앞에 쓴다.

Screen name. (year, month day). Title of video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www.facebook.com/xxxxxxxxxx>.

7. 전자출판된 논문 인용

저자,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수, DOI 주소.

Author, A. (year). Title of article. Journal Title, X, xxx-xxx. doi:xxxxxxx

기 획 · 진 행 이상엽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김인호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조성실장
김현철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장
이민호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 책임연구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인 쇄 일 2015년 11월 30일

발 행 일 2015년 11월 30일

발 행 처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대전청사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el. 042-869-6114, Fax. 042-869-6777
서울청사 :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el. 02-3460-5500, Fax. 02-3460-5519

자료관련 문의처 학술기반진흥팀 이민호 (Tel. 042-869-6382)

[비매품] 본서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및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서 전자파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동 지침 해설서는 정책연구용역과제인 「연구윤리 지침의 구체성 확보에 관한 연구(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 중에 일부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

